

---

# 2024년도 시니어인턴십 사업 운영안내

---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

참여기업 모집 및 관리

1

참여기업 모집

- (참여기업 요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4대 보험 가입사업장 중 참여자에게 채용기회를 제공하는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대상

※ 단, 기업 여건상 4대 보험 가입 요건이 일부 미충족 되는 사업장의 경우, 가입 요건이 충족 되는 보험의 가입내역과 미충족 사유 제출 후 인정 시 참여 가능

참여 제외 기업 및 직종

■ <참여 제외 기업>

- ① 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요 업체, 소비 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등
- ② 임금체불 확정 사업장
- ③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또는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기업
  - ※ 단, 일자리 창출에 협력이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에 따라 참여할 수 있음
  - ※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후 지원·관리기간이 종료된 경우 참여 가능
- ④ 기존 참여기업 중 최근 2년간 계속고용 실적이 없는 기업
- ⑤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직종

■ <모집 가능 및 제외 직종>

- ※ 한국고용직업분류 기준(총 450개 직종)
- ① 가능 직종(391개 직종) : 세부 직종은 부록 참고
- ② 제외 직종(59개 직종) :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공공단체 임원, 기업 고위임원, 정부행정 관리자, 법률·경찰·소방·교도관리자, 경비·청소관리자, 정부·공공 행정 전문가, 회계사·세무사·감정전문가, 조세행정·관세행정·국지방행정 사무원, 대학교수 및 강사 2개 직종, 학교 교사 3개 직종, 장학관·연구관 및 교육전문가, 법률전문가 5개 직종, 시민단체 활동가,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2개 직종, 경찰관·소방관 및 교도관 3개 직종, 군인 4개 직종, 의사 5개 직종, 약사 및

한약사, 레크리에이션강사 및 기타 관련 전문가, 점술가 및 민속신앙 종사원, 경호·보안 종사자 4개 직종, 경비원,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청소원,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가사도우미, 제품·광고 영업원, 기타 기술 영업·중개 종사원, 온라인 판매원, 노점 및 이동 판매원, 방문 판매원, 항공기 조종사, 선장·항해사 및 도선사, 우편집배원, 조경원

\* 일용직 및 건설 일용근로 형태는 제외

\*\* 정부 재정이 지원되는 국가바우처 사업에 참여중인 일자리는 참여 제외

\*\*\* 파견직은 참여제외(단, 수행기관 위탁없이 개발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 심의 후 참여가능)

\*\*\*\* 일부 직종은 직업 예시까지 세분화하여 참여 가능 여부 관리(세부내용 부록참조)

세분류 직업명		제외여부	적용기준
0139	부동산·조사·인력알선 및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	조건부 제외	관리소장은 참여가능 조건 충족 시 참여 허용
5230	숙박시설 서비스원		룸메이드는 참여 제외
6229	기타 자동차 운전원		대리운전기사는 참여 제외
6212	선장, 항해사 및 도선사	제외 (조건부 허용)	항해사 참여 허용

- (참여기업 모집) 수행기관은 개발원과 위탁운영 계약체결 즉시 참여기업 모집
  - 수행기관은 기업 현황 조사, 사업 제안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의사가 있는 기업을 적극 발굴
  - 참여기업 모집 시 참여자에 대해 1년 이상 장기고용의사가 있는 기업 및 계속 고용률이 높은 기업을 우선 지원
  - 개발원은 자체적인 기업발굴을 통해 수행기관의 참여기업 발굴을 적극적으로 지원
  - 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대민사이트(노인일자리 여기 등)를 통해 사업 참여 신청, 협약 체결, 실행계획 등록 등 온라인을 통한 참여기업 접수·모집 가능

관련서식	[서식6] 시니어인턴십 참여기업 신청서(일반형)
	[서식7] 세대통합형 참여기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포함)

## 2 지원협약 체결(수행기관-참여기업)

- (협약 체결) 수행기관은 기업에서 제출한 참여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확인 후 참여기업과 협약을 체결
  - 신규('23년도 이후) 설립 기업의 경우, 신규 참여자 기준 연내 최대 5명까지 지원 가능하나, 지역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추가 지원 가능(설립일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발급 기관은 관할 지자체 시설 설치신고증 기준)
  - 당해연도 동일 기업을 기준으로 최대 2개 수행기관과 협약체결 가능
  - 당해연도 동일 기업 기준 지원 가능 인원은 최대 300명으로 제한
- (협약 내용) 「인턴십 지원 협약서」에는 '관련규정'의 준수, 기업에 지원하는 지원금, 기업의 의무와 책임, 위반 시 조치사항 및 지도·점검내용 포함(서식8)

### 관련서식

[서식8] 시니어인턴십 지원 협약서

- (협약 조건) 수행기관은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서류 등의 미비로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조건부 협약을 체결
- (협약 해지)
  - ① 수행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개발원과 사전협의 후 참여기업과 협약 해지 가능
    - 참여기업이 사업 운영 안내 및 협약을 위반한 경우
    - 참여기업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 참여기업이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등
  - ②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이 협약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합의 하에 협약 해지

### 3 실행계획 수립

- (실행계획 신청) 수행기관은 참여기업과 협약 후 사업실행계획을 노인일자리어무시스템을 통해 개발원에 신청
    - 참여기업별로 별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기업 신청서와 참여기업과 체결한 협약서를 포함
    - 수행기관은 신청기업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신청기업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기업 또는 자격요건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 가능
    - 참여기업 실행계획서에 대한 노인일자리어무시스템상 심의요청일을 기준으로 이미 해당기업에 취업한 60세 이상자(일반형)는 참여 불가

※ 단, 업무시스템 장애 등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정(개발원 공문 필요)
  - (실행계획 승인) 개발원은 사업의 적절성, 참여기업 자격요건, 배정 인원 등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 통보
    - 세대통합형의 경우 개발원 지역본부에서 유관자격증 소지여부, 해당 업종 관련 10년 이상 경력 여부, 사업계획 및 확장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실행계획 승인
- 
- 관련서식** [서식7] 세대통합형 참여기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포함)
- 
- 개발원은 계획서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반려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의 자격요건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 가능
  - 기존 참여기업인 경우 전년도 계속고용 정도 등을 확인한 후 선발 여부·한도를 조정하여 승인
- (실행계획 시행) 수행기관은 사업 승인 후 참여기업과의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을 추진
  - (실행계획 변경) 수행기관은 사업 추진 중 중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는 즉시 개발원에 통보 후 실행계획 재승인 필수

## 2 참여자 모집 및 관리

### 1 참여자 모집

- (참여자 요건) 60세 이상으로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개발원 또는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 개발원 또는 수행기관의 교육이 제한되는 경우 참여기업에서 진행하는 교육으로 대체 가능

- (일반형 참여자) 60세 이상 자
- (세대통합형 참여자) 60세 이상의 숙련기술 보유자로 유관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해당 업종 관련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 청년(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계약 필요

#### 신청 제외

- 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 예시)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 ② 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
  - 참여 직전 90일 중 일용직으로 근로일 30일 이하 근무한 경우 제외
  - 세대통합형의 경우,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 취업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한 참여 제외 조건 예외적용
- ③ 당해연도 인턴십 참여 도중 2회 이상 중도 포기한 자
- ④ 인턴십 참여시작일 기준 이미 4대 보험 자격을 취득 중인 자
  - 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중 일용직으로 근로일 30일 이하 근무한 경우 제외
  - 인턴 시작일 이전 퇴직하였으나 사업주의 신고 지연 등으로 인해 취업상태인 경우에는 사실관계 파악(상실 신고 내역 등 확인 및 증빙) 후 참여 가능
    - \* 인턴십 참여 중 4대 보험을 이중 취득한 경우(인턴십 참여기간 중 근로일 30일 이하 일용직 제외) 부적격자로 관리
- ⑤ 인턴십에 참여한 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참여하는 경우
  - 인턴십 참여시작 연도기준 5년이 경과한 경우 재참여 가능
- ⑥ 동일인이 당해연도에 2개 이상 사업장에 참여하는 경우
  - 인턴기간 중도해지자는 1회에 한해 1개월 이상의 잔여기간 동안 재참여 가능
- ⑦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대표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 ⑧ 인턴십 참여 전 3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알선형 참여 사실이 있는 자
- ⑨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
  - 국적 취득자(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 **(홍보·모집)** 수행기관은 개발원과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참여자 선발에 관한 홍보를 시행하고 참여자 모집

※ 사업실행계획의 모집 정보는 노인일자리여기, 사회보장정보원의 행복e음 및 복지로, 국민연금 일자리추천시스템에 연계하여 공고

- **(참여 신청)**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참여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수행기관에 제출(서식9, 서식10)

- 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대민사이트(노인일자리 여기 등)를 통해 사업 참여 신청,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등 온라인을 통한 참여자 접수·모집 가능

※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 개발원에서 인정 가능한 방법으로 4대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확인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관련서식**

[서식9] 시니어인턴십 참여신청서(참여자용)

[서식10] 시니어인턴십 참여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적격심사 및 안내)** 수행기관은 참여희망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건강 상태, 적성 및 희망 직종 등에 대한 취업 상담 시행

- 수행기관은 참여희망자에게 자격요건과 함께 부정참여 시 지원금 환수 및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부과됨을 사전 안내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게 노력

※ 개발원은 관련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자격확인을 시행하고, 수행기관은 참여노인(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참여기업을 통해 4대 보험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받아 부적격 참여자 제한

## 2 참여자 선발

- **(자격기준 확인)** 수행기관은 신청자의 사업참여 적격성을 확인

- (자격정보) 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 사실, 인턴십 참여 시작일 기준 4대 보험 기 취득 등 자격 확인을 위한 관련 증빙을 제출받아 확인

※ 참여노인(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및 참여기업을 통해 4대 보험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받아 부적격 참여자 제한

※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 개발원에서 인정 가능한 방법으로 4대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확인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노인일자리 참여경력·중도포기여부)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으로 확인
- (참여자 선발) 수행기관은 기업과 협의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자 선발
  - 직무 난이도가 높거나 참여기업의 요구조건이 복잡하여 중도탈락자 발생이 우려될 경우 별도의 인력풀을 구축할 수 있고, 이 경우 참여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선발 이전에 사전교육을 시행하고 최종 선발
  - 본사와 지사의 경우 참여자 선발은 근무 사업장별로 관할 수행기관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

### 3 참여자 교육

- 수행기관은 참여자의 업무능력 향상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 향상 등을 위해 참여자 대상 대면교육을 실시하거나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
  - ※ 개발원 또는 수행기관의 교육이 제한되는 경우 참여기업에서 진행하는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교육 관리대장을 통해 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확인·관리 필수
- (안전교육) 수행기관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교육을 필수로 진행
- (소양교육) 수행기관은 참여자의 조직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직장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기 위해 소양 교육(인권교육, 사업안내, 근로자의 자세, 직원간의 예절, 부적격·부정수급 사례 및 위반 시 제재사항 등)을 실시
- (직무교육) 수행기관은 참여자의 업무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계속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직무교육 과정을 마련하여 제공
- 개발원은 소양·직무교육에 대해 지원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참여자 교육 대장(서식13)을 작성하고, 관련 정보는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에 등록
  - ※ 비대면 온라인 교육 시 참여자 교육 대장 생략 가능. 단, 이수증 또는 수료증 구비

관련서식	[서식13] 참여자 교육 관리 대장
------	---------------------

### 3 참여기업과 참여자간 약정체결

#### 1 인턴십 약정(근로계약 체결)

- (약정체결) 참여기업과 참여자는 상호 협의하여 「인턴십 약정」을 체결(서식11)
  - 일반형은 최소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 세대통합형은 6개월 이상의 약정 체결 및 약정서(또는 근로계약서) 교부
    - ※ 세대통합형은 인턴십 약정 체결을 생략하고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교부
  - 기업에서 장기 고용 계약체결을 희망할 경우, 표준 또는 자체 근로계약서 내 인턴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여 인턴십 약정서 작성을 생략 가능(서식12)
  - 이때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약정서로 보며, 근로계약서는 인턴십 약정서의 내용을 준수

#### 관련서식

[서식11] 시니어인턴십 약정서

[서식12] 표준 근로계약서(서식 변경 가능)

- (약정체결의 변경) 참여기업은 참여자와 약정을 체결하고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을 변경하여 체결한 경우 지원금 신청 전까지 수행기관에 제출
  - 약정 변경으로 지원금이 과지급 된 경우 회수 가능
- (재참여 제한) 일반형 참여자가 인턴기간 3개월을 초과하거나 채용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세대통합형 참여자가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연도 내 재참여 불가
  - 약정기간 내 중도해지자는 1회에 한해 1개월 이상의 잔여기간 동안 재참여를 허용

#### 2 참여자의 법적 지위 및 4대 보험적용

- (법적 지위) 인턴십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며, 일반형 참여자는 3개월 이내의 단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 인정
- (4대 보험적용) 참여기업은 사회보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

### 3 참여자 근무조건 및 근무관리

#### 가. 근무조건

- **(약정급여)** 근로기준법, 기간제/단시간근로자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령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약정·지급해야 하며 약정서(근로계약서)에 임금의 종류, 금액, 산출내역 등을 명확히 하여 당사자 간에 자율적 조율
- **(약정기간)** 일반형 인턴 약정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에서 당사자 간 약정으로 하되, 약정체결 이후에도 기업 사정 등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약정기간을 단축 가능(최소 1개월 이상)
  - ※ 세대통합형의 경우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전제로 함
- **(업무상 재해 인정)**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또는 질병)로 인한 요양기간은 약정 및 계속고용 기간으로 인정
  - 참여자 사고 발생 시 수행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수행기관은 사고 발생내역 및 산재처리 여부 등을 업무시스템을 통해 입력 및 관리 필수
  -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부상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산재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2항)
  - 참여자의 업무상 재해(또는 질병)에 의한 요양, 무급휴직(기업의 사유)으로 연속된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회계연도 내에서 지원금 산정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업무상 재해(또는 질병)가 아닌 사유로 요양하는 경우 그 요양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시점에서 약정은 자동 해지
- **(근무 시간 등)** 근무시간은 당해 기업의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운영할 것을 권장하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하며,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
  -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일자 및 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이를 약정서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

- (약정의 효력 및 보충) 약정은 근로관계 법령 및 당해 기업의 단체협약·취업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근로조건은 근로관계 법령 및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나. 근무 관리

### ○ (근무 관리)

- 참여기업은 인턴약정서(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적정업무를 부여하고 출결 관리 등 근무상황을 적정하게 관리
- 참여기업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수행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근무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

### ○ (급여 및 수당 지급)

- 참여기업은 근로자의 확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사원번호, 입사일 등),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급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출근일수·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근로소득세·고용보험료 등 공제항목별 금액 등 공제내역 등을 기재하여 임금명세서를 교부
- 참여기업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참여자와 체결한 약정서에서 정한 날에 급여를 참여자 계좌로 지급

※ 급여지급 시 참여자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3자 또는 대리인 등에 지급 불가

- 참여자가 금융거래가 불가하여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수 현금지급 확인서 수령 및 증빙자료 필수 구비

※ 보수 현금지급 확인서에 대한 증빙자료는 신용회복지원 확인서(신용회복위원회 발급서류) 등 금융거래가 불가함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 가능

**관련서식** [서식14] 보수 현금지급 확인서

- (전담자 지정) 참여기업은 행정업무 지원 및 참여자의 원활한 적응 지원을 위하여 인턴십 운영 전담자를 지정하여 운영

- (약정 해지) 참여기업은 약정(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참여자가 사전 협의 없이 3회 이상 무단결근, 약정내용 불이행 등 불성실하게 참여하거나, 질병·개인적인 사정 등 사업참여가 어려울 시 약정 해지 가능
    - 참여자가 참여 기간 도중에 업무상 재해(또는 질병)가 아닌 사유로 요양하는 경우 그 요양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약정은 자동 해지
    - 참여기업은 약정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참여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총 3회 이상인 경우 약정 해지 가능
- ※ 근로기준법의 정함에 따른 정당한 해고사유 등을 담은 서면통지, 30일 전 해고 예고 등 병행되어야 함

#### 다. 중도해지자 관리

- (중도해지 방지 및 제한) 수행기관과 참여기업은 참여자에게 약정내용, 업무 내용 등을 충분히 안내하여 중도탈락을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참여기업 및 참여자가 약정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 제시
  - (중도해지자의 재참여) 중도해지자는 1회에 한해 1개월 이상의 잔여기간 동안 타사업장에 재참여를 허용하되 다음의 규정 준용
    - 일반형 참여자가 인턴기간 참여 중 중도해지된 경우, 참여기간이 1개월 미만 이면 개월 수를 새로 산정하고, 1개월 이상이면 잔여 개월 수로만 산정
- ※ 단, 세대통합형의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 참여기간을 새로 산정

#### 중도해지 시 참여가능 기간

- ▶ 일반형 참여자 기준 1개월 미만인 경우 개월 수를 새로 산정, 1개월 이상인 경우 잔여 개월 수로 산정
    - 1개월 미만 참여 후 중도해지 : 잔여기간 3개월
    - 2개월 미만 참여 후 중도해지 : 잔여기간 2개월
    - 3개월 미만 참여 후 중도해지 : 잔여기간 1개월
- ※ (잔여 개월 수 산정 예시) 1월 10일 참여시작 후 2월 9일 중도해지한 경우 1개월 참여로 산정, 잔여기간 2개월간 타사업장 재참여 가능, 4월 5일 중도해지한 경우 3개월 미만 참여로 산정, 잔여기간 1개월간 타사업장 재참여 가능

- **(중도해지자 통보 및 지원금 계산)** 참여기업은 참여자가 중도에 퇴사 또는 약정을 해지한 경우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수행기관에 통보
  - 중도해지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은 지원유형의 월 한도 범위 내에서 지급
- **(결원 보충)** 참여기업은 참여자의 귀책사유로 중도 퇴사한 경우 수행기관에 대체 인력 충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대체 충원된 참여자의 지원 기간은 새로이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라. 근로여건 보장**

- **(부당해고 방지)** 수행기관은 사후관리를 통해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간 만료 전 또는 계속 고용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자를 부당하게 해고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5년간 인턴십 참여를 제한하는 등 참여자가 부당한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
- **(근무기간 준수)** 수행기관은 사후관리를 통해 참여기업이 약정기간(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퇴사 조치하는 경우, 잔여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참여자 퇴사일로부터 1년간 인턴십 참여를 제한 할 수 있음

## 시니어인턴십 참여기업 신청서(일반형)

<b>기업 개요</b>	사 업 장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요 사 업	
	상시근로자수		설 립 연 도	
	담 당 부 서		홈 페이지	
	담 당 자		연 락 처	
	F A X		이메일 주소	
	소 재 지 (도로명 주소)	□□□□□		

<b>모집 사항</b>	모 집 직 종		인 원	(명)	
	근 무 조 건	월 급 여	000원	참 여 기 간	. . . ~ . . . (개월)
		형 태	주5일/격일제 등		
		시 간	00시~00시		
	자 격 요 건 등	○자격증, 전산 활용, 운전 여부 등			
운 영 계 획	○오리엔테이션, 운영방안, 계속고용계획, 참여자교육방법(개발원·수행기관 연계 또는 직접운영) 등 작성				
시니어인턴십 시행 이후 계속고용 예정 인원 명 (%)계획					

○ 참여기업 자격요건 및 부정 수급에 대한 제재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위와 같이 시니어인턴십 참여기업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대표자 (인 또는 서명)

(수행기관명) 00000000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고유번호증 보유 기관은 설립연도 확인을 위해 관할 지자체시설 설치신고확인증 첨부
2.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증빙 서류 1부(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등)



## 세대통합형 활동계획서

<b>멘티 현황</b>	청년멘티 성명		연령(만)	
	청년멘티 성명		연령(만)	
	청년멘티 성명		연령(만)	

<b>사업 계획</b>	<b>1. 운영개요</b> ○ (참여자 모집방안) ※ 참여자를 어떠한 방식으로 모집할 것인지 기술 ○ (참여자 조건) ※ 세대통합형 참여자의 자격요건(자격사항, 경력 등) 기술 ○ (사업의 필요성) ※ 세대통합형 참여자를 선발해야 되는 사유, 필요성 등에 대해 기술			
	<b>2. 추진계획</b> ○ (주요활동 내용) ※ 세대통합형 참여자 및 청년멘티가 어떠한 직무를 담당할지, 직무가 어떠한 활동인지에 대해 기술			
	(예시) 직무	상세내용		
	금속가공 제어장치 조작	전기로 설비현황 및 설비운영관리 기술 지도 전기로 로황에 따른 원료, 전기로 제어방법 기술 지도		
	○ (청년멘토링 계획)			
	<b>구분</b>	<b>주요활동</b>	<b>운영시기</b>	<b>시행횟수</b>
	직무교육	금속가공제어장치 조작 실습	3월~6월	주 3회
	평가회	멘토활동 평가	12월	1회
	※ 청년멘토링을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할지, 운영시기, 시행횟수 등 기술 ○ (기대효과)			
	<b>3. 향후 확대 방안</b> ※ 세대통합형 참여자 계속고용 계획, 추가 선발 계획 등 기술			

## 시니어인턴십 지원 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수행기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기업(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시니어인턴십」(이하 “인턴십”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효기간 및 정부지원금 지급)** ① 이 협약은 협약체결일부터 “을”에 대한 정부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단, 계속고용된 경우에는 계속고용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② “갑”은 인턴십 운영안내에 따라 “을”이 채용한 참여자의 근무 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3조(근무조건)** 근무 장소(외근영업을 시키거나,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없음), 업무 내용,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은 참여자와 체결한 「인턴십 약정서」 또는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제4조(시니어인턴십 참여신청서의 비치)** “을”은 시니어인턴십 참여신청서를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그 운영계획 내용을 참여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5조(참여기업의 협력 의무)** “갑”은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안내에 의거하여 “을”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점검을 위해 사업장 출입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6조(운영상황의 통보)** “을”은 사업 운영실적을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고, “갑”의 실적파악을 위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7조(정부지원금 지급)** ① “갑”은 “을”과의 지원협약 및 사업실행계획에 따른 지원유형 및 약정(근로) 기간에 따라 “을”이 지급한 월 급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원금을 지급한다.

1. 일반형 인턴 참여자에게 지급한 월 급여의 50%(월 최대 40만원)를 지급 절차에 따라 최대 3개월간의 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
2. 일반형 인턴 참여자의 약정 종료 후 당해연도 계속근로계약(6개월 이상)을 체결하고 계속 채용한 경우 지급 절차에 따라 3개월 간 월 급여액의 50%(월 최대 40만원)를 지원한다.
3. 세대통합형 참여자에게 지급한 누적 월 급여가 지원금(300만원)을 초과한 시점 이후 “을”의 신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③ “갑”은 “을”과 참여자 사이에 약정이 해지되거나, 참여자가 중도에 근무를 포기한 경우 일반형 참여 시 “을”이 지급한 급여의 50%(월 최대 40만원)를 세대 통합형의 경우 참여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누적 급여총액이 지원금을 초과할 경우 지원한다. (단, 장기취업유지지원금제외)

④ “을”은 매월 급여일에 참여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다음, 참여자 임금명세서, 급여 계좌이체 관련 자료, 임금통장 사본 등을 첨부한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3개월 단위 또는 신청요건을 충족한 시점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을”은 참여자에 대하여 “갑”의 지원금 수령일과 관계없이 「인턴십 약정서」 및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날에 우선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위반 및 해지)** ① “갑”은 본 계약과 관련한 위반 사항 또는 시니어인턴십 운영안내에 명시된 규정 위반 등이 발생한 경우 “을”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즉시 시정하여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이 본 계약에 중대한 위반 또는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을”이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하거나 정부지원금을 신청·지급한 때

나. 사업이 중단되어 소기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사업의 본래 취지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다. 최저임금 및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약정한 기간 만료 전 또는 계속고용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턴십 약정」 또는 「근로 계약」을 해지한 때

라. 시니어인턴십 운영안내상 점검조치 결과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의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

마. 본 계약과 시니어인턴십 운영안내를 위반하여 “갑”으로부터 시정조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중대한 사유로 본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9조(제재)** ① “갑”은 “을”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자를 채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갑”은 “을”이 최저임금 및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갑”은 “을”이 채용인원 한도를 초과하여 채용하거나 임의로 채용한 참여자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갑”은 “을”이 “갑”으로부터 알선을 받기 전에 채용하거나, 채용일 전 90일 이내에 해당 기업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 자 등 운영안내에 위반하여 참여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갑”은 “을”이 약정한 기간 만료 전 또는 계속고용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턴십 약정」 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추후 5년간 인턴십 참여를 배제한다.

⑥ “을”이 운영안내 및 약정을 위반한 경우 “갑”은 운영안내에 따라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약정 해지 및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정부지원금의 반환·상계)** ① “을”이 운영안내 및 이 협약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개발원 또는 “갑”의 요구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갑”이 정부지원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경우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을 상계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중도 포기 등 통보)** “을”은 약정기간 종료 전에 참여자가 중도 포기하거나, 중도에 약정을 변경 또는 해지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5일 이내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계속고용)** ① “을”은 「시니어인턴십 참여신청서」의 운영계획 내용 중 계속고용 계획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인턴을 계속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안내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첨부한 채용자 명단을 수행기관에 제출하고 계속고용기준(6개월 이상의 고용계약 체결)에 따라 고용이 유지된 경우에는 “갑”의 요청에 따라 고용유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 “을”은 계속고용을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 후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해지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장기취업 지원)** ① “을”은 인턴십 일반형 또는 세대통합형 유형으로 참여자를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이상 고용한 뒤 장기취업지원금(18·24개월 80만원, 30·36개월 60만원)을 개발원 및 “갑”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을”은 해당 장기취업 유지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한 장기취업유지 지원금 신청서를 개발원 및 “갑”에게 지원기준일(18·24·30·36개월 경과시점)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시니어인턴십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상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필수)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필수 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나이(만 연령)	시니어인턴십 사업의 참여를 위한 참여자 선발, 관리 및 사업운영지원, 지원자 사후관리(민간취업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연구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서 및 관련서류: 사업종료 후 5년까지</li> <li>•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 : 5년까지</li> </ul>

※ 위의 개인정보(필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니어 인턴십 참여자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필수)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선택 정보	세대구성형태, 최종학력, 경력사항, 특이사항(자격사항 및 상담자 의견)	시니어인턴십 사업의 참여를 위한 참여자 선발, 관리 및 사업운영지원, 지원자 사후관리(민간취업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연구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서 및 관련서류: 사업종료 후 5년까지</li> <li>•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 : 5년까지</li> </ul>

※ 위의 개인정보(선택)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시니어인턴십 참여 신청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선택)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선택)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건강상태	시니어인턴십 사업의 참여를 위한 참여자 선발, 관리 및 사업운영지원, 지원자 사후관리(민간취업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연구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서 및 관련서류: 사업종료 후 5년까지</li> <li>•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 : 5년까지</li> </ul>

※ 위의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시니어인턴십 참여 신청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마케팅 정보 수신(선택)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연락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련 뉴스, 이벤트 정보, 신규 서비스 안내,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한 문자 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서 및 관련서류 : 사업종료 후 5년까지</li> <li>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 : 사업종료 후 5년까지</li> </ul>

※ 위의 마케팅 정보 수신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련 뉴스 등 다양한 정보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케팅 정보 활용을 위해 문자 메시지로 수신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수행기관명) 00000000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3 및 제26조에 의해 아래와 같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합니다.

처리 항목	처리 목적	처리 근거
주민등록번호	시니어인턴십 사업의 참여를 위한 참여자 선발, 관리 및 사업운영지원, 지원자 사후관리(민간취업지원), 부적격·부정수급 관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연구 수행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3 및 제26조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26조,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5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선발 및 선발 제외 대상자 식별, 참여자 관리(부적격·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타 공공기관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일자리참여정보를 제공하여 아래 정보를 조회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참여자 선발 : 타재정일자리 사업 참여 여부 참여자 관리 : 타재정일자리 사업 참여 여부 변동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참여자 선발 및 관리 :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및 변동, 기초연금 수급 여부 및 변동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참여자 선발 및 관리 : 사회보험 자격 정보(사회보험 취득사항, 사업장명, 취득일 및 상실일)

## 시니어인턴십 약정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약 정 기 간 : 20 . . . ~ 20 . . .

2. 근 무 장 소 :

3. 업 무 내 용 :

4. 근 로 시 간 : *요일부터 요일까지,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5.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6. 급여 : 월(일, 시간)급 : 금          원 ※급여 반드시 기재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 유급휴일은 급여에 포함됨

7. 근무관리

- “갑”은 “을”의 귀책 사유(무단결근 등) 발생 시 “을”에게 서면으로 3회 이상 경고해야 함

8. 효력 및 변경통보

- 위 약정은 근로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갑”은 근로조건 변경 시 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함

“갑”과 “을”은 이와 같이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서로 약정하며 본 계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

“갑” 사 업 장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소 재 지 :

“을”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인 또는 서명)



## 참여자 교육 관리 대장

연번	참여자명	생년월일	교육명(교육내용)	교육기관	교육 일자	참여자 서명
1	홍길동	630101	직장 내 기본예절(세부내용)	수행기관명 또는 기업명 등	2024.01.0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이수증 또는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

## 보수 현금지급 확인서

- 사업장명 :
- 성 명 :
- 연 락 처 :
- 주 소 :

상기 본인은 \_\_\_\_\_ 년 \_\_\_\_\_ 월분  
 급여 \_\_\_\_\_ 원을 (수령이유)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참여자 \_\_\_\_\_ (인 또는 서명)

※ 금융거래 불가 등 사유로 현금으로 지급받아야하는 사유 확인이 가능한 객관적 증빙 서류 필수 제출(예시 : 신용회복 지원 확인서 등, 발급처 : 정부 24)

※ 보수현금 지급확인서는 반드시 신청자 본인의 자필서명 확인

**일반형 지원금 지급신청서(참여기업용)**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사업장명			
담당자		연 락 처	
은행명/ 예금주명	/	계좌번호	

총 신청 인원	총 _____명
총 신청 금액	총 _____원

**【구비서류】**

■ 인턴지원금 신청 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4대 보험 가입 관련 서류 (인턴기간 종료 +1일 시점 이후 발급분)

■ 채용지원금 신청 시(일반형에 한함)

※ 계약내용 변경 시 근로계약서 재첨부

■ 공통

- 통장 사본
- 참여자 임금명세서, 급여 계좌 이체확인자료(계좌 이체확인증 등, 단 통장 사본 제외) 각 1부
- 지원금 신청 인원별 산출내역 1부
- 참여자 근로계약서(또는 약정서) 사본 각 1부(최초 지원금 신청 시 제출)

참여 자격요건 및 부정 수급에 대한 제재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기재사항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위와 같이 시니어인턴십 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또는 서명)

○○○ 수행기관장 귀하

[별지] 지원금 신청 인원별 산출내역

연번	참여자 정보			신청정보				
	성명	생년 월일	직종	신청 지원금	인턴 기간 또는 계속고용 계약 기간	근무 월	급여 지급액 (세전, 원)	신청 금액 (원)
신청금액 합계							인턴지원금 채용지원금	
1	홍길동	630101	주유원	인턴 지원금	24.00.00	1	1,500,000	400,000
					~24.00.00	2	1,500,000	400,000
						3	1,500,000	400,000
				채용 지원금	24.00.00	4	1,500,000	400,000
					~24.00.00	5	1,500,000	400,000
						6	1,500,000	400,000
2				인턴 지원금	24.00.00 ~24.00.00			
				채용 지원금	24.00.00 ~24.00.00			
3				인턴 지원금	24.00.00 ~24.00.00			
				채용 지원금	24.00.00 ~24.00.00			
4				인턴 지원금	24.00.00 ~24.00.00			
				채용 지원금	24.00.00 ~24.00.00			
5				인턴 지원금	24.00.00 ~24.00.00			
				채용 지원금	24.00.00 ~24.00.00			

※ 유의사항 : 직종분류표(수행기관 문의)를 참고하여 직종을 작성, 지원금 작성 시 일반형은 월급여액의 50%(월 최대 40만 원) 지급

※ 신청 회차는 필요 시 추가 가능(그 외 양식 수정 불가)

## 세대통합형 지원금 지급신청서(참여기업용)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사업장명			
담당자		연 락 처	
은행명/ 예금주명	/	계좌번호	

총 신청 인원	총 _____ 명
총 신청 금액	총 _____ 원

**【구비서류】**

1. 참여자 임금명세서, 급여 계좌이체확인자료(계좌이체 확인증 등, 단 통장사본 제외)각 1부
2. 참여자 근로계약서 및 참여자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등 4대 보험 관련 서류
3. 청년멘토 활동 보고서(별지 참조)
4. 참여자 숙련기술보유 관련 증빙(보유 자격증 사본, 관련 경력증명서)자료
5. '청년멘티'의 근로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 자료(4대 보험 가입자명부 등 4대 보험 관련서류)
6. 통장사본

참여 자격요건 및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기재사항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위와 같이 세대통합형 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또는 서명)

○○○ 수행기관장 귀하

## 세대통합형 청년멘토 활동 보고서

청년멘토 성명 (참여자)		근로계약일	20 . . . . ~ . . . .
전수분야			
멘티 성명(1)		생년월일	
멘티 성명(2)		생년월일	
멘티 성명(3)		생년월일	

활동내용	○ 주요 활동 내용 기재 ○ ○ ○		
활동사진			
멘티의 활동 소감	○ ○		

위와 같이 세대통합형 청년멘토로 활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또는 서명)

**【유의사항】**

1. 청년멘토(참여자) 보유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기타 경력을 확인 가능한 서류 등)
2. '청년멘티'의 근로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 자료(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등 4대 보험 관련 서류) 필수 제출



## 서약서

시니어인턴십 사업이 장기취업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확인하며, 만약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급받은 지원금 반납 및 향후 시니어인턴십 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등의 처분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본 기관(기업)은 시니어인턴십 사업(장기취업유지형) 신청에 대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
  - 1) 제반 현황자료가 신청일 현재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작성됨.
  - 2) 신청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아니함.
  - 3) 신청서에 작성된 장기취업 유지자는 중앙정부 등 타 사업 중복지원(일자리안정자금 등)이 불가함.
  - 4) 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해당기업에서 일정기간(참여시작일 기준 18/24/30/36개월) 이상 상실이력 없이 장기 고용하고 있으며, 신청시점 기준 현재에도 고용하고 있음.
2. 본 기관(기업)은 사업과 관련하여 요청되는 자료 및 문의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협조한다.
3. 본 기관(기업)은 사업에 참가함에 있어 시니어인턴십 사업운영 안내에 따라 소기의 성과(목적)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년      월      일

기업(기관)명 :

(인)

○ ○ ○ 수행기관장 귀하

**부록**

**직종 분류표(한국고용직업분류, 2018)**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직업명		제외 여부	
0	경영·사무·금융·보험직	01	관리직 (임원·부서장)	011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111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공공단체임원	제외
					0112	기업 고위임원	제외	
				012	행정·경영·금융·보험 관리자	0121	정부행정 관리자	제외
						0122	경영지원 관리자	
						0123	마케팅·광고·홍보 관리자	
						0124	금융·보험 관리자	
				013	전문서비스 관리자	0131	연구 관리자	
						0132	교육 관리자	
						0133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리자	제외
						0134	보건·의료 관리자	
						0135	사회복지 관리자	
						0136	예술·디자인·방송 관리자	
						0137	정보통신 관리자	
				0139	부동산·조사·인력 알선 및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	조건부 제외		
				014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 관리자	0141	미용·여행·숙박·스포츠 관리자	
						0142	음식서비스 관리자	
						0143	경비·청소 관리자	제외
				015	영업·판매·운송 관리자	0151	영업·판매 관리자	
						0152	운송 관리자	
						0159	기타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자	
				016	건설·채굴·제조·생산 관리자	0161	건설·채굴 관리자	
						0162	전기·가스·수도 관리자	
						0163	제조·생산 관리자	
						0169	기타 건설·전기 및 제조 관리자	
		02	경영·행정·사무직	021	정부·공공행정 전문가	0210	정부·공공행정 전문가	제외
						022	경영·인사 전문가	0221
				0222	인사·노무 전문가			
				023	회계·세무·감정 전문가	0231	회계사	제외
						0232	세무사	제외
						0233	관세사	
						0234	감정 전문가	제외
				024	광고·조사·상품 기획·행사 기획 전문가	0241	광고·홍보 전문가	
						0242	조사 전문가	
						0243	상품 기획자	
						0244	행사 기획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직업명		제외 여부		
				025	정부·공공 행정 사무원	0251	조세행정 사무원	제외		
						0252	관세행정 사무원	제외		
						0253	병무행정 사무원			
						0254	국가·지방행정 사무원	제외		
						0255	공공행정 사무원			
				026	경영지원 사무원	0261	기획·마케팅 사무원			
						0262	인사·교육·훈련 사무원			
						0263	총무 사무원 및 대학 행정조교			
						0264	감사 사무원			
				027	회계·경리 사무원	0271	회계 사무원			
						0272	경리 사무원			
				028	무역·운송·생산· 품질 사무원	0281	무역 사무원			
						0282	운송 사무원			
						0283	자재·구매·물류 사무원			
						0284	생산·품질 사무원			
				029	안내·고객상담· 통계·비서·사무 보조 및 기타 사무원	0291	안내·접수원 및 전화교환원			
						0292	고객 상담원 및 모니터 요원			
						0293	통계사무원			
						0294	비서			
						0295	전산자료 입력원 및 사무 보조원			
						0299	기타 사무원			
				03	금융·보험직	031	금융·보험 전문가	0311	투자·신용 분석가	
								0312	자산 운용가	
								0313	보험·금융상품 개발자	
								0314	증권·외환 딜러	
								0315	손해사정사	
								0319	기타 금융·보험 전문가	
								032	금융·보험 사무원	0321
						0322	증권 사무원			
						0323	보험 심사원 및 사무원			
						0324	출납창구 사무원			
						0325	수금원 및 신용 추심원			
0329	기타 금융 사무원									
033	금융·보험 영업원	0331	대출 및 신용카드 모집인							
		0332	보험 모집인 및 투자 권유 대행인							
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11	인문·사회과학 연구직	110	인문·사회과학 연구원	1101	인문과학 연구원			
						1102	사회과학 연구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직업명		제외 여부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121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1211	자연과학 연구원			
					1212	자연과학 시험원			
			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1221	생명과학 연구원			
					1222	생명과학 시험원			
					1223	농림어업 시험원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31	컴퓨터하드웨어 ·통신공학 기술자	1311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및 연구원	
	1312	통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1320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133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133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1333	웹 개발자							
	1339	기타 컴퓨터 전문가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134	데이터·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1341	데이터 전문가			
					1342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			
					1343	적분시스템 운영자			
					1344	웹 운영자			
					1349	기타 데이터 및 네트워크 전문가			
	135	정보보안 전문가			1350	정보보안 전문가			
	136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1360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401	건축가	
							1402	건축공학 기술자	
							1403	토목공학 기술자	
							1404	조경 기술자	
			1405	도시·교통 전문가					
			1406	측량·지리정보 전문가					
			1407	건설자재 시험원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11	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12	로봇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13	기계·로봇공학 시험원			
			152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21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22	금속·재료공학 시험원			
			153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1531	전기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직업명		제외 여부
					시험원	1532	전자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33	전기·전자공학 시험원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41	화학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42	화학공학 시험원	
				155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51	가스·에너지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52	가스·에너지공학 시험원	
						1553	환경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54	환경공학시험원	
						1555	보건위생·환경 검사원	
				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61	섬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62	섬유공학 시험원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71	식품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72	식품공학 시험원	
				158	소방·방재·산업 안전·비파괴 기술자	1581	방재 기술자 및 연구원	
						1582	소방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83	소방공학시험원	
						1584	산업 안전원 및 위험 관리원	
						1585	비파괴 검사원	
				159	제도사 및 기타 인쇄·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91	제도사	
1599	기타 인쇄·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	교육·법률·사회복지·보건·직업교육·기술교육·인문	21	교육직	211	대학 교수 및 강사	2111	대학 교수	제외
						2112	대학 시간강사	제외
				212	학교 교사	2121	중고등학교 교사	제외
						2122	초등학교 교사	제외
						2123	특수교육 교사	제외
						2129	기타 교사	
						2130	유치원 교사	
				214	문리·기술·예능 강사	2141	문리·어학 강사	
						2142	컴퓨터 강사	
						2143	기술·기능계 강사	
						2144	예능 강사	
						2145	학습지·교육교구 방문강사	
				2149	기타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215	장학관 및 기타 교육	2151	장학관·연구관 및 교육 전문가	제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직업명		제외 여부		
3	보건·의료직	30	보건·의료직	21	종사자	2152	대학 교육 조교(연구 조교 포함)			
						2153	교사보조 및 보육보조 서비스 종사원			
				22	법률직	221	법률 전문가	2211	판사 및 검사	제외
								2212	변호사	제외
								2213	법무사 및 집행관	제외
								2214	변리사	제외
								2219	기타 법률 전문가	제외
								222	법률 사무원	2220
				23	사회복지· 종교직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2311	사회복지사	
								2312	상담 전문가	
								2313	청소년 지도사	
								2314	직업상담사	
								2315	시민단체 활동가	제외
						232	보육교사 및 기타 사회복지 종사자	2321	보육교사	
								2329	기타 사회복지 종사원	
						233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2331	성직자	제외
								2339	기타 종교 종사원	제외
				24	경찰·소방· 교도직	240	경찰관 및 소방관 및 교도관	2401	경찰관 및 수사관	제외
		2402	소방관					제외		
		2403	교도관 및 소년원학교 교사					제외		
		25	군인	250	군인	2501	영관급 이상 장교	제외		
						2502	위관급장교	제외		
						2503	부사관	제외		
						2509	기타 군인	제외		
		30	보건·의료직	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3011	전문 의사	제외		
						3012	일반 의사	제외		
						3013	한의사	제외		
						3014	치과 의사	제외		
				302	수의사	3020	수의사	제외		
				303	약사 및 한약사	3030	약사 및 한약사	제외		
				304	간호사	3040	간호사			
				305	영양사	3050	영양사			
				306	의료기사·치료사· 재활사	3061	임상병리사			
						3062	방사선사			
						3063	치과기공사			
						3064	치과위생사			
3065	물리 및 작업 치료사									
3066	임상심리사									
3067	재활공학 기사									
3069	기타 치료·재활사 및 의료기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직업명		제외 여부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41	예술·디자인·방송·직	307	보건·의료 종사자	3071	응급구조사	
						3072	위생사	
						3073	안경사	
						3074	의무기록사	
						3075	간호조무사	
						3076	안마사	
						3079	기타 보건·의료 종사원	
		411	작가·통번역가	4111	작가			
				4112	번역가 및 통역가			
				4113	출판물 전문가			
				412	기자 및 언론 전문가	4120	기자 및 언론 전문가	
						413	학예사·사서·기록물관리사	4131
				4132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414	창작·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4141	화가 및 조각가	
		4142	사진작가 및 사진사					
		4143	만화가 및 만화영화 작가					
		4144	국악인 및 전통 예능인					
		4145	지휘자, 작곡가 및 연주가					
		4146	가수 및 성악가					
		4147	무용가 및 안무가					
		415	디자이너	4149	기타 시각 및 공연 예술가			
				4151	제품 디자이너			
				4152	패션 디자이너			
				4153	실내장식 디자이너			
				4154	시각 디자이너			
		416	연극·영화·방송 전문가	4155	미디어 콘텐츠 디자이너			
				4161	감독 및 기술감독			
				4162	배우 및 모델			
4163	아나운서 및 리포터							
4164	촬영 기사							
4165	음향·녹음 기사							
4166	영상·녹화 편집 기사							
417	문화·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4167	조명·영상 기사					
		4169	기타 연극·영화·방송 종사원					
		4171	공연·영화 및 음반 기획자					
		4172	연예인매니저 및 스포츠매니저	4172	연예인매니저 및 스포츠매니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직업명		제외 여부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420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종사자	4201	스포츠 감독 및 코치			
						4202	직업 운동선수			
						4203	경기 심판 및 경기 기록원			
						4204	스포츠강사 레크리에이션강사 및 기타 관련 전문가	제외		
						4209	기타 스포츠 및 여가서비스 종사원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51	미용.예식 서비스직	511	미용 서비스원	5111	이용사			
						5112	미용사			
						5113	피부 및 체형 관리사			
						5114	메이크업 아티스트 및 분장사			
						5115	반려동물 미용 및 관리 종사원			
				5119		기타 미용 서비스원				
				512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5121	결혼상담원 및 웨딩플래너		
							5122	혼례 종사원		
							5123	장례 지도사 및 장례 상담원		
							5124	점술가 및 민속신앙 종사원	제외	
		5129	기타 개인 생활 서비스원							
		5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521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원	521	여행 서비스원	5211	여행상품 개발자	
								5212	여행 사무원	
								5213	여행 안내원 및 해설사	
				522		항공기.선박.열차 객실승무원	5221	항공기 객실승무원		
							5222	선박.열차 객실승무원		
							5230	숙박시설 서비스원	조건부 제외	
		5240	오락시설 서비스원							
		53	음식 서비스직	531	주방장 및 조리사			5311	주방장 및 요리 연구가	
								5312	한식 조리사	
								5313	중식 조리사	
								5314	양식 조리사	
								5315	일식 조리사	
5316	바텐더									
5317	음료조리사									
5319	기타 조리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직업명		제외 여부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54	경호·경비직	532	식당 서비스원	5321	패스트푸드 준비원		
						5322	홀서빙원		
						5323	주방 보조원		
						5324	음식 배달원		
						5329	기타 음식 서비스 종사원		
			541	경호·보안 종사자	5411	경호원	제외		
					5412	청원경찰	제외		
					5413	시설·특수 경비원	제외		
					5419	기타 경호·보안 종사원	제외		
			542	경비원	5420	경비원 (건물 관리원)	제외 (조건부 허용)		
			55	돌봄 서비스직 (간병·육아)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5501	요양 보호사 및 간병인	제외
							5502	육아도우미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561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5611	청소원	제외 (조건부 허용)
							5612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제외 (조건부 허용)
							5613	배관 세정원 및 방역원	
		5614					구두 미화원		
		5615					세탁원 (다림질원)		
		5616					가사 도우미	제외	
		562			검침·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5621	계기 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		
						5622	자동판매기 관리원		
						5623	주차 관리·안내원		
						5624	검표원		
						5629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원		
						611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6110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612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6121	기술 영업원				
				6122	해외 영업원				
				6123	자동차 영업원				
6124	제품·광고 영업원			제외					
6125	상품 중개인 및 경매사								
6129	기타 기술 영업·중개 종사원			제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직업명		제외 여부		
				613	텔레마케터	6130	텔레마케터			
				614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자	6140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원			
				615	판매 종사자	6151	상점 판매원			
						6152	통신 기기·서비스 판매원			
						6153	온라인 판매원	제외		
						6154	상품 대여원			
						6155	노점 및 이동 판매원	제외		
						6156	방문 판매원	제외		
						6157	주유원 (가스충전원)			
				616	매장 계산원 및 대표원	6161	매장 계산원 및 요금 정산원			
						6162	대표원 및 복권 판매원			
				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6171	홍보 도우미 및 판촉원			
						6179	기타 판매 단순 종사원			
				62	운전·운송직	621	항공기·선박·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6211	항공기 조종사	제외
								6212	선장, 항해사 및 도선사	제외 (조건부 허용)
								6213	철도 전동차 기관사	
								6214	관제사	
								6219	기타 철도운송 종사원	
						622	자동차 운전원	6221	택시 운전원	
								6222	버스 운전원	
								6223	화물차·특수차 운전원	
								6229	기타 자동차 운전원	조건부 제외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	6230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6241	택배원	
								6242	우편물 집배원	제외
								6243	선박승무원 및 관련 종사원 (선박객실 승무원 제외)	
								6244	하역·적재 종사원	
6249	기타 배달원									
7	건설·채굴직	70	건설·채굴직			701	건설구조 기능원	7011	강구조물 기공원 및 건립원	
				7012	경량철골공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직업명		제외 여부					
						7013	철근공					
						7014	콘크리트공					
						7015	건축 석공					
						7016	건축 목공					
						7017	조적공 및 석재부설원					
						7019	기타 건설 구조 기능원					
				702	건축마감 기능원	7021	미장공					
						7022	방수공					
						7023	단열공					
						7024	바닥재 시공원					
						7025	도배공 및 유리 부착원					
						7026	건축 도장공					
						7027	새시 조립설치원					
						7029	기타 건축 마감 기능원					
				703	배관공	7031	건설 배관공					
						7032	공업 배관공					
						7039	기타 배관공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7040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705	기타 건설 기능원 (채굴포함)	7051	광원, 채석원 및 석재 절단원					
						7052	철로설치·보수원					
						7059	기타 채굴·토목 종사원					
				706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	7060	건설·채굴 단순 종사원					
				8	설치·정비· 생산직	81	기계 설치·정비· 생산직	811	기계장비 설치·정비원 (운송장비 제외)	8111	공업기계 설치·정비원	
										8112	승강기 설치·정비원	
										8113	물품이동장비 설치·정비원	
										8114	냉동·냉장·공조기 설치·정비원	
8115	보일러 설치·정비원											
8116	건설·광업 기계 설치·정비원											
8119	농업용 및 기타 기계장비 설치·정비원											
812	운송장비 정비원	8121	항공기 정비원									
		8122	선박 정비원									
		8123	철도기관차·전동차 정비원									
		8124	자동차 정비원									
		8129	기타 운송장비 정비원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8131	금형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직업명		제외 여부			
					조작원	8132	금속 공작기계 조작원				
				814	냉·난방 설비 조작원	8140	냉·난방 설비 조작원				
				815	자동조립라인· 산업용로봇 조작원	8150	자동조립라인·산업 용로봇 조작원				
				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8161	일반기계 조립원				
						8162	금속기계부품 조립원				
				817	운송장비 조립원	8171	자동차 조립원				
						8172	자동차 부품 조립원				
						8173	운송장비 조립원				
		82	금속·재료 설치·정비·생 산직(판금·단조· 주조·용접·도장 등)	821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작원	8211	금속가공 제어장치 조작원				
							8212	금속가공 기계 조작원			
				822	판금원 및 제관원			8221	판금원		
									8222	판금기조작원	
									8223	제관원	
									8224	제관기조작원	
				823	단조원 및 주조원			8231	단조원		
									8232	단조기조작원	
									8233	주조원	
									8234	주조기조작원	
				824	용접원			8241	용접원		
									8242	용접기조작원	
				825	도장원 및 도금원			8251	도장원 (도장기조작원)		
									8252	도금·금속분무기 조작원	
				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261	유리·유리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262	점토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263	시멘트·광물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264	광석·석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269	기타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 산직	831	전기공	8311	산업 전기공		
			8312					내선 전기공			
			8313					외선 전기공			
		832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8321	사무용 전자기기 설치·수리원		
									8322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8329	기타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직업명		제외 여부
				833	발전·배전 장치 조작용	8330	발전·배전 장치 조작용	
				834	전기·전자 설비 조작용	8340	전기·전자 설비 조작용	
				835	전기·전자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작용	8351	전기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작용	
						8352	전자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작용	
		836	전기·전자 부품·제품 조립원	8360	전기·전자 부품·제품 조립원			
		84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841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	8411	컴퓨터 설치·수리원	
						8412	이동전화기 수리원	
						8419	기타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	
				842	방송·통신장비 설치·수리원	8421	방송장비 설치·수리원	
						8422	통신장비 설치·수리원	
						8423	방송·통신·인터넷 케이블 설치·수리원	
		85	화학·환경 설치·정비· 생산직	851	석유·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용	8511	석유·천연가스 제조 제어장치 조작용	
						8512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용	
						8519	기타 석유·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용	
				852	고무·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용 및 조립원	8521	타이어·고무제품 생산기계 조작용	
						8522	플라스틱제품 생산기계 조작용	
						8523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용(고무·플라 스틱 제외)	
						8524	고무·플라스틱 제품 조립원	
				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용	8531	상·하수도 처리장치 조작용	
						8532	재활용 처리장치·소각로 조작용	
				86	섬유·의복 생산직	861	섬유 제조·가공 기계 조작용	8611
		8612	직조기·편직기 조작용					
		8613	표백·염색기 조작용					
		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8621	패턴사	
						8622	재단사	
						8623	재봉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직업명		제외 여부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8629	기타 섬유·가죽 기능원			
						8631	한복 제조원			
						8632	양장·양복 제조원			
						8633	모피·가죽의복 제조원			
						8634	의복·가죽·모피 수선원			
						8639	기타 의복 제조원			
				864	제화원, 기타 섬유·의복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8641	제화원			
						8642	신발 제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8643	세탁 기계 조작원			
						8649	기타 직물·신발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87	식품 가공·생산직	871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8711	제과·제빵원	
								8712	떡 제조원	
						872	식품 가공 기능원	8721	정육원 및 도축원	
								8722	김치·밑반찬 제조 종사원	
		8723	식품·담배 등급원							
		8729	기타 식품 가공 종사원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8731	유류·어패류·낙농품 가공기계 조작원			
						8732	제분·도정 기계 조작원			
						8733	곡물 가공제품 기계 조작원			
						8734	과실·채소 기계 조작원			
						8735	음료 제조기계 조작원			
		8739	기타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8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881	인쇄기계·사진 현상기 조작원	8811	인쇄기계 조작원			
						8812	사진 인화·현상기 조작원(사진수정 포함)			
				882	목재·펄프·종이 생산기계 조작원	8821	목재 가공기계 조작원			
						8822	펄프·종이 제조장치 조작원			
						8823	종이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829	기타 목재·종이 기계 조작원			
				883	가구·목제품 제조·수리원	8831	가구 제조수리원			
						8832	가구 조립원			
						8833	목제품 제조원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8841	공예원			
						8842	귀금속·보석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직업명		제외 여부				
				885	악기·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	8851	세공원 악기 제조원 및 조율사					
						8852	간판 제작·설치원					
						8853	유리기능, 복사, 수제 제본 등 기타 기능 종사원					
						8859	주입·포장·상표부착기 및 기타 기계 조작원					
						89	제조 단순직	890	제조 단순 종사자	8900	제조 단순 종사원	
9	농림어업직	90	농림어업직	901	작물재배 종사자	9011	곡식작물 재배원					
						9012	채소·특용작물 재배원					
						9013	과수작물 재배원					
						9014	원예작물 재배원					
						9015	조경원	제외				
				902	낙농·사육 종사자	9021	낙농 종사원					
						9022	가축 사육 종사원					
						9029	기타 사육 종사원					
				903	임업 종사자	9031	조림·산림경영인 및 벌목원					
						9039	임산물 채취 및 기타 임업 종사원					
				904	어업 종사자	9041	양식원					
						9042	어부 및 해녀					
				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9050	농림어업 단순 종사원					
				10항목		35항목		136항목		450항목		

### <조건부 허용 세부 규정>

- ※ (0139) 관리소장은 ① 설비·안전 등 업무 관련 자격증 보유 여부, ② 근무장소당 1인 배치 여부, ③ 정상 근로시간대 근무 여부(교대 또는 야간근무 금지)까지 3개 조건 모두 충족 시 참여 허용
- ※ (5420) 경비원, (5611) 청소원, (5612) 환경미화원은 ① 수행기관 위탁 없이 심의를 통해 개발원 직접 운영, ② 외부 위탁업체를 통한 용역이나 파견이 아닌 직고용, ③ 제한된 사업량(24년 3,000개) 이내 추진, ④ 기업지원금 50% 감액 지원까지 4개 조건 모두 충족 시 참여 허용